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정호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0000호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4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정문 부근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굿모닝병원 쪽에서 강남초등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일시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B(55세,남) 운전의 울산00-0000호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6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이 법원의 바른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손피 정도만 확인한 채 다시 승차한 후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명함만으로는 안 되고 정확한 사고처리를 하고 싶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③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쫓아 다시 차량을 정차시켰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도 없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 운전택시의 손피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치료받은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